



## 인도네시아 Tax Info 2021 년 7 월호

### 전자서명 발급에 관한 시행령

2021 년 6 월 7 일에 재무부장관(MoF)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통해 납세 권리와 의무를 쉽게 준수하고 국세청(DGT)에서 전자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규정 번호 63/PMK.03/2021(PMK-63)을 발행했다. PMK-63 은 2021 년 정부 규정 번호 9 에서 제기된 관련 주제에 대한 시행령 역할을 한다 (2021 년 3 월호 Tax Info 참조).

#### 납세자의 전자 서명 사용

PMK-63 에 따라 납세자는 납세 권리와 의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전자 서명(e-signatures)을 사용할 수 있다. DGT 는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조세 문서를 결정함.

#### In this issue:

1. [Implementing regulation on e-signatures issued](#)
2. [Update on luxury-goods sales tax borne by government facility for sales of vehicles](#)
3. [Luxury-goods sales tax bases for certain electric vehicles to be amended](#)

전자 서명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인증된 전자 서명은 승인된 전자 서명 발급기관이 발행한 전자 서명을 말한다. 발급기관은 신청절차 및 전자서명 유효기간을 결정한다; 또한
- 비인증된 전자 서명은 DGT 가 인증 코드 형식으로 발급한 전자 서명을 말한다. 코드 신청은 지정된 온라인 포털을 통해 납세자 번호 등록과 함께 제출하거나 납세자 번호를 얻은 후 별도로 DGT 에 제출 할 수 있다.

DGT 의 온라인 시스템은 자동으로 DGT 의 인증 코드 신청을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코드에 대한 출력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납세자는 DGT 에 통지한 후 전자 서명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된 전자 서명 사용에서 DGT 인증 코드 사용으로(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거나 전자 서명 발급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한 서류(e-document)는 납세자가 수동으로 서명한 세금 서류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전자 서류는 전자 플랫폼을 통해 DGT 에 제출해야 하며 DGT 는 서류 제출 증명서(bukti penerimaan elektronik (BPE))를 발급한다.

PMK-63 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누구의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납세자 유형	적격 서명자
개인 납세자	납세자
개인이외의 납세자	이사, 청산인 등 납세자의 대리인
납세 권리 또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납세자의 대리인	대리인

## DGT 의 전자 서명 사용

DGT 는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세액 확정 통지서, 세금 결정 통지서 및 기타 조세서류를 전자발행하고 서명 할 수 있다. 이 서류는 하드카피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발행된 서류에 대해 과세 당국은 자서 서류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 전자 서명과 관련된 자세한 지침은 DGT 가 별도로 발행할 예정임.

A document that have been signed using an e-signature has the same legal standing as a tax document signed manually by a taxpayer.

For letter issued electronically, the tax authority does not need to issue a hardcopy with manual signature.

PMK-63 은 납세자와 국세청이 새로운 전자 서명 요구 사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2022 년 12 월 31 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그 동안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 재무부장관령 147/PMK.03/2017 에 따라 DGT 가 발급한 e-certificates(예를 들어 납세자 등록 번호 증명서)은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됨;
- 재무부장관령 29/PMK.03/2020 (PMK-29)(예를 들어 COVID-19 기간에 조세 행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조세 행정 절차는 PMK-63 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 PMK-29 에 따름;
- PMK-63 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전자제출 조세서류 조항은 그대로 유효함;
- 전자신고 등록번호 (가장 최근에 PER-02/PJ/2019 에 의해 개정된 PER-41/PJ/2015 를 기반으로 발행됨) 및 인증되지 않은 전자서명을 통한 인증코드(PER-02/PJ/2019 를 기반으로 발행된)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정부 기관은 인증된 전자서명으로 전환될 때까지 DGT 인증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
- DGT 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DGT 인증 코드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서류를 발행하고 서명할 수 있음; 또한
- 현재 DGT 가 조세 관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로 임명한 제 3 자는 DGT 가 임명한 날로부터 6 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음

## 차량 판매 관련 정부가 부담하는 사치품 판매세제 혜택 업데이트

Covid-19 기간 동안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재무부장관령 31/PMK.010/2021 (PMK-31) 을 통해 재무부 장관은 자동차 산업에 특정 유형의 차량 판매에 대해 정부(구매자 반대)가 부담하는 사치품 판매세(LST) 및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2021 년 4 월호 Tax Info 참조). 재무부는 자동차 부문의 국가 구매력 유지를 위해 조세혜택이 지속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100% LST borne by the government facility for some types of vehicles are extended to 31 August 2021.

이에 2021 년 6 월 28 일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부담하는 사치품 판매세 업데이트를 위해 장관령 77/PMK.010/2021 (PMK-77)를 발행함.

차량 유형 (디젤 또는 세미 디젤)	LST rate	정부가 부담하는 사치품 판매세	
		Under PMK-31	Under PMK-77
실린더 용량이 최대 1,500cc 인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2021 년 4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2021 년 4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li> </ul>
10 인 미만 차량(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제외), 단축 구동 시스템, 실린더 용량 1,500cc 이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2021 년 6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li> <li>• 25% (2021 년 9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2021 년 6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li> <li>• <b>(변동)</b></li> <li>• 25% (2021 년 9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li> </ul>
10 인 미만의 차량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제외), 단축 구동 시스템 및 1,500cc 부터 2,500cc 까지의 실린더 용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2021 년 4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li> <li>• 25% (2021 년 9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2021 년 4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li> <li>• 25% (2021 년 9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li> </ul>
10 인 미만의 차량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제외), 양축 구동 시스템 및 1,500cc 부터 2,500cc 까지의 실린더 용량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 (2021 년 4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li> <li>• 12.5% (2021 년 9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 (2021 년 4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li> <li>• 12.5% (2021 년 9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li> </ul>

PMK-77 이 2021 년 6 월 1 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해당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발행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경우 PMK-77 에 의해 개정된 변경 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초과 부가세를 환급해야 한다.

## 특정 전기 자동차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 과세표준 개정

차량 배기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고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EV)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이브리드 및 기타 유형의 EV 판매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 부과를 재검토했다. 이전 정부령 2019 년 73 호에 규정된 사치품 판매세 과세 업데이트를 위해 2021 년 7 월 2 일에 인니 정부는 2021 년 정부령 74(PP-74)를 공표했다.

PP-74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초기 13 1/3%~ 33 1/3% 로 설정된 풀 하이브리드 기술을 사용한 실린더 용량이 최대 3,000cc 인 특정 차량에 대한 LST 부과 기준(즉, 판매 가격 비율)은 40%~ 46 2/3 로 증가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사치품 판매세 부과 기준은 기존 0%에서 33.1/3%로 증가된다. 이 변경 사항은 2021 년 10 월 16 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기존 기술(사치품 판매세 기준이 판매 가격의 100%인 경우)로 구동되는 차량에 비해 계속해서 환경적 이점이 있지만 100% 배터리 기반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반함.

-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 산업에 최소 IDR 5 조의 투자가 실현되고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 경우 2021 년 10 월 16 일부터 여러 유형의 EV 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 부과 기준은 기존 33 1/3%~80% 사이의 세율에서 53 1/3%~93 1/3% 사이로 증가된다:
  - 투자후 2 년 경과; 또는
  -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 산업이 상업 생산을 개시됨.

추가 LST 로 인해 EV 의 판매 가격이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EV 를 생산하는 납세자는 PP-74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PP-74 는 2021 년 10 월 16 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하며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기타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Managing Partner**

mehimawan@deloitte.com

### Business Tax and M&A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 Business Tax

**Ali Mardi Djohardi**

alimardi@deloitte.com

###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upriyanto@deloitte.com

### Business Tax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Yan Hardyana**

yhardyana@deloitte.com

###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mailto: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http://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